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5113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최성만

변론 종결 2024. 9. 5.

판결 선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을 172,591,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2,5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9. 7. 3. C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을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C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612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C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이혼 등

1) 피고와 C은 1994. 3.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수원가정법원 2019호협315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2019. 9.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2019. 8. 27.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갑 : C

을 : B

갑과 을은 현재 수원가정법원 2019호협3151호로 진행 중인 협의이혼절차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다.

1. C은 B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는 B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3. 위 1, 2항 이외에 재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C 명의로 된 부동산과 B 명의로 된 부동산 및 C, B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각 재산으로 확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는데, 위 재산분할은 정당한 정도(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2)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분할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과대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9. 8. 27.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이하 E조합은 'E조합'이라 한다), F조합, G조합,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인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370,676,260원이다.

1	제1 부동산	675,457,000	
2	제2 부동산		
3	제3 부동산	246,000,000	
4	오산시 I건물, 제1층 J호1) 이하 적극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62,010,000	
5	경북 칠곡군 K 임야 4451m ² 중 1/2지분	131,304,500	
6	위 L 임야 358m ² 중 1/2 지분	52,447,000	
7	위 M 임야 336m ² 중 1/2 지분	49,274,400	
8	위 N 임야 737m ² 중 1/2 지분	116,446,000	
9	위 ○ 임야 955m ² 중 1/2 지분	32,947,000	
10	위 P 임야 219m ² 중 1/2 지분	13,359,000	
11	위 Q 임야 461m ² 중 1/2 지분	71,455,000	
12	위 R 임야 393m ² 중 1/2 지분	100,606,860	
13	위 S 임야 487m ² 중 1/2 지분	79,381,000	
14	위 T 임야 31m ² 중 1/2 지분	1,596,500	
15	문경시 U 전 456m ²	8,892,000	
16	구미시 V건물, W, X, Y, Z, AA, AB, AC, AD호 중 각 1/2 지분	151,000,000	
17	구미시 AE 임야 135m ²	9,500,000	
18	위 AF 공장용지 3280m ²	290,000,000	
19	위 AG 임야 13777m ² 중 9/10 지분	279,000,000	
합계	2,370,676,260		

피고는 제1, 4 부동산의 가액이 위 인정금액이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부동산의 매수가격, 그 이후의 부동산 가격 변동의 상황, 실거래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인정금액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C의 위 적극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제1 부동산	13. 11. 21.	360,000,000	185,314,800	G조합	C	제1 근저당
제4 부동산	09. 6. 10.	13,000,000	0	H조합	C	제2

제1 부동산	13. 11. 21.	360,000,000	185,314,800	G조합	C	제1 근저당
						근저당
제5, 7, 9, 10 부동산	16. 8. 28.	864,400,000	539,500,000	D조합	C	제3 근저당
제5, 9, 10 부동산	17. 3. 31.	451,200,000	0	D조합	AH	제4 근저당
제5, 9, 10 부동산	17. 6. 9.	260,000,000	80,958,8002) 원고의 계산방식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따라 피담보채무액을 대출잔액 161,917,600원의 1/2로 계산한다(이하 같음).	D조합	AH	제5 근저당
제5~8, 11~14부동산	19. 9. 3.	429,000,000	0	AI	(주)AJ	제6 근저당
제6,8 부동산	19. 1. 22.	264,000,000	110,000,0003) 대출잔액 220,000,000원의 1/2, 제9 근저당권 동일한 채무로 간주한다.	D조합	(주)AK	제7 근저당
제6, 8, 9, 11, 13,부동산	19. 7. 5.	120,000,000	0	원고	C, 피고	제8 근저당
제7 부동산	18. 8. 28.	195,000,000	110,000,000	D조합	(주)AK	제9 근저당
제11~14 부동산	18. 7. 17.	572,000,000	157,265,5004) 대출잔액 314,531,000원의 1/2	D조합	(주)AJ	제10 근저당
제16 부동산	15. 6. 15.	130,000,000	50,000,0005) 대출잔액 100,000,000원의 1/2	F조합	C	제11 근저당
16. 12. 19.	312,000,000	0	D조합	C	제12 근저당	
제18 부동산	17. 3. 14.	351,000,000	0	D조합	C	제13 근저당
18. 4. 11.	221,000,000	221,000,0006) 대출잔액은 680,000,000원이나 채권최고액이 221,000,000원이므로 채권최고액을 잔존채무액으로 본다.	D조합	B	제14 근저당	
제19 부동산	17. 4. 28.	136,500,000	52,500,0007) 대출잔액 105,000,000원의 1/2	D조합	AH	제15 근저당
합계	1,396,539,100					

원고는 제6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와 같은 적극재산 관련 제1 내지 15 근저당권부의 담보채무 외에 C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

① SI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원리금 : 498,995,069원

② AL에 대한 가압류채무 : 16,350,000원

③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 10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제1 내지 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1,614,345,06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만을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제1 내지 19 부동산의 가액 합계인 2,370,676,260원이 되나, 위 각 부동산에 제1 내지 14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피담보채권의 합계가 1,396,539,100원에 이르므로, 이를 공제하면 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인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액은 974,137,160원(= 2,370,676,260원 - 1,396,539,100원)이 된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적극재산은

237,976,960원[= 974,137,160원 - 736,160,200원(675,475,000원 + 246,000,000원 - 185,314,800)]이 남게 된 반면, C의 소극재산 합계는 614,745,069원(= 498,395,069원 + 1,635만 원 + 1억 원)에 이르므로, 이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채무초과(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나) 분할대상 재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C과 피고의 실질적인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8) 따라서 C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는 359,392,000원(= 974,137,160원 - 614,745,069원)이다.

① C의 적극재산 : 974,137,160원 상당의 제1 내지 19 부동산

② C의 소극재산 : 614,745,069원

③ 피고의 적극재산 : 시가 불상의 문경시 AM 대 422㎡(이하 'AM 토지'라 한다)9) ④ 피고의 소극재산 : 없음10다) 재산분할의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 사실과 증거,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와 C은 1994. 3.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고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와 C 모두 사업을 영위하면서 혼인생활 내내 부부

공동재산은 원, 피고 쌍방의 소득으로 유지·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와 C의 기여 정도, 그밖에 피고와 C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와 C의 적정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의 합계액이 359,392,000원이므로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재산가액은 179,696,000원($= 359,392,000\text{원} \times 50\%$) 상당이 되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736,160,2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675,475,000원 + 246,000,000원) - 제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85,314,8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556,464,200원($= 736,160,200\text{원} - 179,696,000\text{원}$)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고, 그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시기, 처분행위의 성질, 피고와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다른 부동산들에 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적어 적극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당한 정도를 넘어 재산분할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상당성을 초과한 556,464,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의 가액은 556,464,200원 이고,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172,591,780원[$= 100,000,000\text{원} +$

{100,000,000원 × (3 + 9/365) × 24%}}이어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그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172,591,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72,5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연운희

별지

- 1) 이하 적극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 2) 원고의 계산방식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따라 피담보채무액을 대출잔액 161,917,600원의 1/2로 계산한다(이하 같음).
- 3) 대출잔액 220,000,000원의 1/2, 제9 근저당권 동일한 채무로 간주한다.
- 4) 대출잔액 314,531,000원의 1/2
- 5) 대출잔액 100,000,000원의 1/2
- 6) 대출잔액은 680,000,000원이나 채권최고액이 221,000,000원이므로 채권최고액을 잔존채무액으로 본다.
- 7) 대출잔액 105,000,000원의 1/2
- 8)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재산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9) AM 토지를 포함하면 피고와 C의 순재산이 증가할 것이지만, 해당 토지의 시가를 전혀 알 수 없는데다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 10)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 명의로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680,000,000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9. 11.경 제18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